

「2026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」 사업 가이드라인

1 사업대상

○ 참여 청년

-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9~39세(*1986.3.31.~2007.3.30.) 미취업 청년 40명 내외
- ※ 현재 미취업상태로서 최종 학력이 재학생 및 휴학생은 불가하며, 졸업생만 가능
- ※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제외
- ※ 매칭된 업체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사업주(대표자)인 경우는 불가
- ※ 프로그램 참여 중 중도 이탈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잔여 개월 수까지 총원 가능 (고립청년) 대구시청년센터 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 참여자 20명 정도
 - ※ 2024~2025년도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 홍보를 진행하여 연계
- (니트청년) 미취업기간 6개월 이상 및 고립척도검사 해당자 20명 정도
 - ※ 신청접수 시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고립은둔척도검사 결과를 첨부

○ 참여 업체

- 사회적 기업, 비영리 단체(공공기관 포함), 소규모 사업장 등
- ※ 업종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, 아래 제외요건에서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가
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
 - *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, 시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*
 - *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
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*
 - *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
 - * 공표안 일자로부터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 1년간 참여 제한
-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*
 - * '22년~'23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

2 (참여업체) 공모 및 선정

□ 모집 방법

- 청년센터 홈페이지 및 “줍프”에 공고 게시 후, 이메일로 신청·접수
-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한 업체를 검토하여 적격 업체로 1차 선정
- 적격업체 중 일경험 청년이 희망하여 매칭된 업체를 최종업체로 선정

□ 선정절차

○ 적격업체 검토·결정

- 기본 자격조건, 일경험 환경조성 상태,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격 여부 검토

※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적격 여부 결정

○ 최종업체 선정

- 청년이 희망하여 매칭된 업체를 최종 업체로 선정

※ 참여청년이 해당 업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, 매칭 실패로 자동적으로 참여 불가

○ 세부 선정절차

- 심사 과정

1) 기본자격조건 검토

→ 3.10.(화) ~ 24.(화) 필수 구비서류 누락없이 제출하였는지 확인

→ 부적격 업체 신청 방지를 위하여 ‘참여기업 사실확인서’를 통해 참여업체에 대한 확약 징구

※ 참여기업 사실확인서를 통해 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

2) 서류심사

→ 3.25.(수) 청년센터 활동그래

→ 산(産)·학(學)·연(研) 외부 전문가로서 심사위원 3명 구성

→ 서면심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역량평가 실시

→ 고득점순으로 1차 적격업체 30~40개사(社) 내외 선발

※ 심사기준(안)

심사지표	심사내용	배점
정성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의 안정성과 조직 체계 및 비전 (30점) - 사업장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및 조직 안정화 정도 - 구체화 된 조직 체계 및 체계적인 사내 관리 시스템 유/무 	100점

	- 양질의 일경험을 위한 사업장 환경 및 사전 준비 정도	
	매우우수 26~30 / 우수 21~25 / 보통 16~20 / 미흡 10~15 / 매우미흡 9점 이하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경험을 통한 청년 및 사업장의 성장가능성 (5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의 구체성 - 일경험청년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 및 적절성 - 일경험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육성계획 여부 - 일경험청년을 통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성장 목표설정 여부 	
	매우우수 41~50 / 우수 31~40 / 보통 21~30 / 미흡 11~20 / 매우미흡 10점 이하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경험기간 확대(인턴형 전환) 노력 및 의지 (2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경험기간 확대(인턴형 전환)를 위해 매칭 청년을 전담할 담당자 배치 여부 - 자체 교육 및 면담 등 주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여부 	
	매우우수 18~20 / 우수 15~17 / 보통 12~14 / 미흡 9~11 / 매우미흡 8점 이하	
합 계		100점

사업장 서류심사 시, 정성평가 항목 중점 체크사항

1) 사업장 안정성 및 조직체계	조직의 지속성과 안정성(설립연도, 직원규모, 주요연혁 등)은 어느 정도인지
	구체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
	원활한 일경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지
2) 본 사업을 통한 상호 성장가능성	본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명확한지
	일경험청년을 통해 사업장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적합한지
	일경험청년이 일경험기간동안 수행할 직무 및 그에 따른 육성 계획이 구체적인지
	일경험청년에게 맡길 직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양적, 질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
3) 인턴형 전환 노력·의지	일경험기간 확대(인턴형 전환)를 위한 사업장의 노력 및 의지가 엇보이는지
	일경험청년 전담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은 충분한지
	자체 교육 및 면담 등 주기적인 소통창구 장치가 존재하는지

3) 적격업체 결정

→ 3.26.(목) 결과발표(예정)

→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적격업체 발표 및 개별 통보

3 (참여청년) 공모 및 선정

□ 모집 방법

- 청년센터 홈페이지 및 줍프에 공고 게시 후, 이메일로 신청·접수
-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한 청년을 검토하여 적격여부 판단
- 적격 청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이수 및 희망 사업장 조정
- 적격 청년이 희망한 업체와 상호 면접을 통해 최종 청년으로 매칭

□ 선정절차

○ 적격 청년 검토·결정

- (필수요건) 미취업 상태, 고립은둔척도검사 결과, 나이, 거주지 등 종합 판단하여 참여 가능 여부 검토
 - ※ 미취업 상태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졸업증명서로 확인
 - ※ 고립은둔 해당자는 고립은둔척도검사 결과로 확인
 - ※ 나이 및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

- (선발조건) 적격 청년 대상자 중 청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 직무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, 희망 업체에서 상담(면접)하여 최종 매칭

○ 사전 직무교육

- 이력서작성법, 면접스킬업, 비즈니스매너 등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직무교육을 청년센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

○ 희망 사업장 조정

- 최초 신청서 접수시에 작성했던 1지망, 2지망 업체 중에서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 최종 희망 업체 결정 및 해당 업체와의 면접 일정 조율

○ 희망 사업장 면접

- 희망 사업장에 대한 직접 대면 면접 및 직무상담 실시

○ 최종 청년 매칭

- 상담(면접) 과정을 통해 상호 희망자에 한해 최종 매칭 실시
 - ※ 1개 업체당 1~2명씩(최대 2명까지) 배정

○ 세부 선정절차

- 심사 과정

1) 기본자격조건 검토

- 3.30.(월) ~ 4.10.(금) 필수 구비서류 누락없이 제출하였는지 확인
- 참여청년의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 신청 및 부적격 대상자 신청 방지를 위하여 '참여청년 사실확인서*'를 통해 확약 징구
 - ※ 참여청년 사실확인서를 통해 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
 - ※ 참여청년이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에 기타 유사 정부지원사업에도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여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

2) 사전 직무교육

- 4.14.(화) 14:00 청년센터 활동그레
 - ※ 202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
 - ※ 각 사업장마다 청년을 매칭하기 전, 청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하여 배치(40명 전원)
 - ※ 사전 직무교육에 대한 상세 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

3) 희망 사업장 조정

- 4.15.(수) ~ 17.(금) 개별 전화상담
 - ※ 사전 직무교육을 통해 청년이 희망하는 직종 및 업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1지망, 2지망 업체 중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
- 선택한 희망 업체와의 구체적인 면접 일정을 조율하여 면접 준비
 - ※ 청년센터에서 면접 타임테이블 구성 및 개별 안내

4) 희망 사업장 상담(면접) 및 매칭

- 4.20.(월) ~ 30.(목) 현장 대면 상담(면접)
 - ※ 사업장의 일경험 환경조성 상태 점검 차원에서 실제 사업장에 방문함과 동시에 면접 과정에 청년센터도 참여하여 3자(청년센터-참여업체-일경험청년)간 면접실시(동행면접)
 - ※ 형식적인 면접이 아닌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시, 구체적인 직무수행계획 및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호 간 협의과정

5) 최종 매칭

- 5.6.(수) 결과발표(예정)
-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최종 매칭 결과 발표 및 개별 통보

6) 중도 이탈자 추가 매칭(안)

- 중도 이탈자 발생 인원에 따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잔여 개월 수까지 충원(7월 이후 예정)
- 희망 사업장 면접 과정(4월 면접 당시)에서 매칭되지 않은 청년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재매칭 기회 부여
- 희망 사업장을 재조정하여 최종 희망 업체 결정 및 해당 업체와의 면접 일정 조율
- 희망 사업장 면접 및 최종 매칭(8월부터 체험형 예정)
 - ※ 중도 이탈자 발생 여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 - ※ 추가 매칭의 경우 체험형만 해당하며, 인턴형으로의 연계는 불가

4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

□ 체험형

○ 지원기간

- (1일, 4시간씩) 1주(5일) 단위로 총 4주간 참여
 - ※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하루 4시간씩 및 주5일 단위는 고정값이며, 사업장 및 청년이 참여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 - ※ 출석부 및 프로그램 수행보고서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이력 증빙

○ 지원내용

- 현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
 - ※ 각 사업장으로 매칭 전, 청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사전 사업 취지·목적 설명, 직무교육 실시
 - ※ 사업장 조정과정에서 청년은 각 사업장별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최종 희망업체 선택
 - ※ 프로그램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현장체험 형태로 진행
 - ※ 프로그램 구성(안)

참여기간	활동내용	배정인원
•사업장 매칭 전	•청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실시 (사전교육 완료 후, 각 사업장으로 파견)	•1개 사업장당 1~2명씩 배치 (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)
•4주(1일, 4시간)	•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-일반사업체 사무보조, 청소, 전화 등 단순 업무 -소상공인 점포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체험 -비영리 중간지원조직 행사,교육,봉사 등 업무보조	

※ 업무 유형별 활동내용(일경험 프로그램)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

○ 지원금액

- (1인당) 총 100만원의 지원금(참여수당) 지급

※ 기본 산출 근거 : 1일 4시간씩, 1주 단위(5일 기준) 25만원

※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율 50% 이상일 때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, 1일 5만원 기준으로 산출

※ 일 단위로 프로그램 출석 및 이수 현황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되, 지급의 편의상 월 단위로 한 번에 정산하여 지급

※ 출석 인정 사유 없이 2일 연속으로 무단 결석시, 프로그램 중도 이탈로 간주

※ 정당한 사유(경조사, 치료, 공가 등)일 경우 최대 4일까지 허용

※ 지원금 산출표

	참여기간	프로그램 이수내역	지원금 산출내역
지급 예시	20일	프로그램 참여율 50% 이상	(1일)5만원*20일=100만원
	19일		(1일)5만원*19일=95만원
	18일		(1일)5만원*18일=90만원
	17일		(1일)5만원*17일=85만원
	16일		(1일)5만원*16일=80만원
	15일		(1일)5만원*15일=75만원
	14일		(1일)5만원*14일=70만원
	13일		(1일)5만원*13일=65만원
	12일		(1일)5만원*12일=60만원
	11일		(1일)5만원*11일=55만원
	10일		(1일)5만원*10일=50만원
	1일 ~ 9일	프로그램 참여율 50% 미만	지원금 없음

□ 인턴형

○ 지원기간

- (1일, 8시간씩) 1주(5일) 단위로 총 12주간 참여

※ 체험형 수료자에 한해 인턴형으로 연계

※ 체험형 완료 후, 상호(청년-사업장) 간 일경험 연장 희망자에 한해 연계(최대 10명)

※ 10명이 초과할 경우,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

※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하루 8시간씩 및 주5일 단위는 고정값이며, 사업장 및 청년이 참여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
※ 체험형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참여이력 증빙

○ 지원내용

- 전담 멘토링 및 실무 병행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

- ※ 체험형에서 심화한 개념으로 일경험 시간을 연장(4시간→8시간/4주→12주)한 인턴형으로 발전
- ※ 사업장에서 자체 직무교육을 수행할 전담 멘토 지정
- ※ 프로그램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실무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
- ※ 프로그램 구성(안)

참여기간	활동내용	배정인원
•12주(1일, 8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고유 업무 배정 및 실무 프로젝트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일반사업체 사무 기획 및 운영 -소상공인 점포의 업무 기획 및 실행 -비영리 중간지원조직 내 프로젝트 수행 등 	•체험형 완료 후, 인턴형 연계 (최대 10명/ 초과시, 무작위 추첨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담 멘토링(사업장 자체 직무교육) 병행 (직무교육을 수행할 전담 멘토 지정) 	

※ 업무 유형별 활동내용(일경험 프로그램)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

○ 지원금액

- (1인당) 총 600만원의 지원금(참여수당) 지급

- ※ 기본 산출 근거 : 일 8시간씩, 1주 단위(5일 기준) 50만원
- ※ 기본적으로 월 단위 프로그램 참여율 50% 이상일 때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, 1일 10만원 기준으로 산출
- ※ 일 단위로 프로그램 출석 및 이수 현황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되, 지급의 편의 상 월 단위로 한 번에 정산하여 지급
- ※ 출석 인정 사유 없이 2일 연속으로 무단 결석시, 프로그램 중도 이탈로 간주
- ※ 정당한 사유(경조사, 치료, 공가 등)일 경우 월 최대 4일까지 허용
- ※ 지원금 산출표

	참여기간	프로그램 이수내역	지원금 산출내역
	월단위 지급 예시	20일	월 단위 프로그램 참여율 50% 이상
19일		(1일)10만원*19일=190만원	
18일		(1일)10만원*18일=180만원	
17일		(1일)10만원*17일=170만원	
16일		(1일)10만원*16일=160만원	
15일		(1일)10만원*15일=150만원	
14일		(1일)10만원*14일=140만원	
13일		(1일)10만원*13일=130만원	
12일		(1일)10만원*12일=120만원	
11일		(1일)10만원*11일=110만원	
10일		(1일)10만원*10일=100만원	
1일 ~ 9일		월 단위 프로그램 참여율 50% 미만	

※ 위의 지급예시 형태로 3개월 반복

□ 지원금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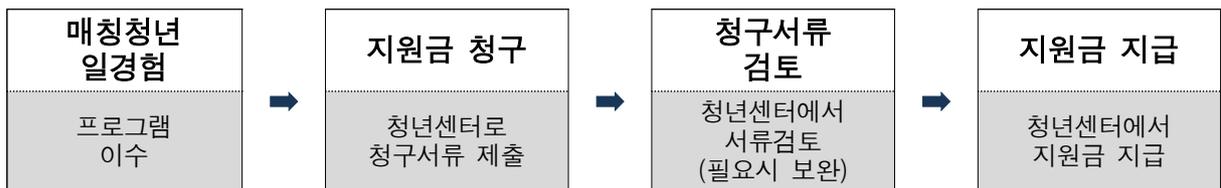
<참여청년 지원금>

- 지급시기 : 청년이 월 단위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, 지급
 - ※ 신청서류 목록 1) 지원금 신청서(청구서 및 통장사본 포함) 1부.
 - 2) 프로그램 참여일지(출석부 및 프로그램 수행보고서 등) 1부.
- 지급방식 : 청년센터에서 참여청년에게 지원금 직접 지급

구 분	내 용	
	체험형(4주, 日4시간 프로그램)	인턴형(12주, 日8시간 프로그램)
청년센터 (이수자 대상 직접 지급)	(1인당) 주25만원(총100만원)	(1인당) 주50만원(총600만원)

- ※ 별도 근로계약(사업장-청년)을 체결하지 않으며, 3자간(청년센터-사업장-청년) 상호 협약서를 체결함
- ※ 참여 청년의 지위는 정식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으로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, 재해보상책임보험으로 대체하며, 청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여 파견함

- 지급과정 :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



<참여업체 전담멘토링 지원금>

- 멘토내용
 - 멘토(사수)를 지정하여 참여청년을 상시 관리 및 컨설팅(계획·보고)
- 지급내용
 - 전담 멘토를 지정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직무교육(컨설팅)을 수행하는 담당 사수에게 개인 통장으로 별도 지원금을 1인당 월30만원 지급
 - 멘토는 인턴형에만 해당하며, 일경험청년과 전담멘토를 1대1로 배정
 - 단, 전담할 청년이 1개 사업장에 2명인 경우에는 멘토 1인당 2명까지 배정 가능
 - 당연히 멘토 지원금도 1인 월 60만원까지 지급
 - ※ 신청서류 목록 1) 컨설팅 계획서 1부.
 - 2) 신청서(청구서 및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 포함) 1부.
 - 3) 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.

5 현장점검 및 관리

- 점검대상 : 참여 업체 및 청년
- 점검시기 : 지원기간 내 업체별 1회 이상(체크리스트 활용)
 - 특별한 이슈 발생 시 수시 점검 실시
 - ※ 지원기간동안 현장방문 최소 1회 이상, 필요시 서면 점검 등도 실시
- 점검내용
 - 사업장 내 청년 일경험 실태조사(상호 협약서 준수사항 포함)
 - 지원사업 관련 사업장·청년 의견 청취
- 점 검 자 : 대구시(市), 사업수행기관(청년센터)
- 조치사항
 - 지원조건 위반 등 발생 시 개선 및 필요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
 - ※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, 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 규정에 근거함
 - ※ 참여업체 및 참여청년이 지원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,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(필요시 형사고발 가능)
 - 건의사항 등 청취한 의견 수렴하여 추후 사업추진 시 반영
- 현장점검 체크리스트(안)

점 검 사 항	점 검 결 과	
1. 참여업체 적격 여부 · 제외요건 해당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2. 참여청년 적격 여부 · 미취업상태 여부 · 사업자등록 여부 · 대표자·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3. 일경험 환경조성 및 현황 관리 · 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· 일경험 장소, 시간 적정 여부 · 물리적 환경조성 및 준비상태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	<input type="checkbox"/> 미가입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정
4. 프로그램 이행실태 ·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 준수 여부 · 일경험 도중 특이사항 발생 여부 · 출결상황 관리 여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없음
7. 서류작성 상태 및 지원금 적정성 · 지원금 신청서류 및 참여일지 프로그램 보고서 등 · 지원금 지급의 적정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정

6 출석 및 수료 기준

○ 출석 인정 범위

- 일경험 기간 중 법정 공휴일 및 회사 내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일을 출석한 것으로 간주
- 기타 법령 및 공가, 병가, 경조사* 등의 사유로 인한 출결 관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해 출석으로 인정

*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연속으로 무단 결석할 경우 중도이탈로 간주할 수 있음

- 기타 특수상황(천재지변, 유행성 감염병 등) 발생 시, 대구시와 청년센터 간 협의하에 처리

※ 추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의 출석 기준 적용

○ 수료기준 및 수료증 발급방법

- 체험형의 경우 4주 완료시, 인턴형의 경우 12주 완료시에 수료
- 수료와 별개로 지원금은 지원금 산출표에 근거하여 정산 및 지급
-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은 청년센터에 수료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

<출석 및 수료 기준>

▶ 출석 인정 범위

- 법정 공휴일 및 회사 내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출석 인정
- 기타 법령 및 공가, 병가,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출결 관리는 증빙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만 출석 인정(월 최대 4일까지 허용)
- 무단결근 2일 연속 시 중도포기로 간주

▶ 수료기준 및 수료증 발급

- 체험형은 4주, 인턴형은 12주동안 참여기간을 모두 참여 완료 시, 청년센터로 요청하여 수료증 발급 가능